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00

발의연월일: 2025. 4. 14.

발 의 자:서천호·김선교·조경태

김예지 · 최보윤 · 정성국

정희용 • 우재준 • 박덕흠
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(船團)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,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

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·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,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, 제16조 및 제21조).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조업시기와 구역을 정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도록 명할 수 있다.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 -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"을 "제2항 및 제3항"으로,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무선설비의 고장, 전파혼신(混信), 통신권 이탈 등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리고,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혂 행 아 제15조(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) 제15조(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) ① · ② (생 략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<신 설>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 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조업 시기와 구역을 정 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 도록 명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,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 로 정한다. 제16조(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| 제16조(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의 제한) ① • ② (생략) 의 제한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 <신 설>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・ 도지사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 하여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해역에 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 ③ (생략)

제21조(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 지)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(생략)

④ 제2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, 수색·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21조(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
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
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무
선설비의 고장, 전파혼신(混信),
통신권 이탈 등 해양수산부령
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본부
에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
우에는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
알리고,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
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
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
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⑤ 제2항 및 제3항
<u>제4</u>
~1